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64호 2022. 10. 11(화)

선 람	기관의 장

## 고 시

- 남원시 공고 제2022-136호 2021회계년도 남원시 결산 고시----- 1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982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남원시 공고 제2022-1986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
- 남원시 공고 제2022-1993호 공시송달공고----- 25
- 남원시 공고 제2022-1995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 남원시 공고 제2022-199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37

회 람										
--------	--	--	--	--	--	--	--	--	--	--

#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22-136호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0. 7.

## 남 원 시 장

### 1. 세입 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189,653,996,472	1,211,481,422,338	1,204,534,788,783	213,776,750	6,732,856,805
일 반 회 계	1,091,478,707,782	1,111,815,565,367	1,105,980,680,402	213,776,750	5,621,108,215
특 별 회 계	98,175,288,690	99,665,856,971	98,554,108,381	0	1,111,748,590

###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계	1,189,653,996,472	1,016,835,743,606	143,949,022,940	10,753,667,356	18,115,562,570
일 반 회 계	1,091,478,707,782	935,841,179,745	129,599,929,620	10,595,517,074	15,442,081,343
특 별 회 계	98,175,288,690	80,994,563,861	14,349,093,320	158,150,282	2,673,481,22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단위:원)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잉여금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 금	순세계 잉여금
계	1,204,534,788,783	1,016,835,743,606	187,699,045,177	42,663,806,790	100,750,216,150	10,816,816,101	33,468,206,136
일 반	1,105,980,680,402	935,841,179,745	170,139,500,657	35,782,075,790	93,282,853,830	10,652,144,459	30,422,426,578
특 별	98,554,108,381	80,994,563,861	17,559,544,520	6,881,731,000	7,467,362,320	164,671,642	3,045,779,558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4. 기금현재액 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 금	11,403,571,041	△992,516,954	10,411,054,087

## 5. 채권 현재액 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2,192,015,454	△2,997,036,708	9,194,978,746
일 반 회 계	8,119,380,204	△2,790,639,410	5,328,740,794
특 별 회 계	3,594,760,000	△204,723,000	3,390,037,000
기 금	477,875,250	△1,674,298	476,200,952

## 6. 채무 현재액 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 7.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1,768,949,232,070	170,944,250,022	1,939,893,482,092

## 8. 물품 현재액 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유액
물 품	10,802,604,592	763,664,294	11,566,268,886

## 9. 재정상태보고서

(단위:원)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3,464,557,551,300	29,015,639,063	3,435,541,912,237

## 10. 재정운영보고서

(단위:원)

총 비 용	총 수 익	운영차액
845,079,036,809	972,967,919,928	△127,888,883,119

## 11. 성과보고서

(단위:원)

정책사업목표	결 산 액	전년도결산액	비교증감
92개수 263지표수	926,500,068,138	877,827,315,936	48,672,752,202

## 12. 예비비 지출

(단위: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6,401,476,000	5,454,031,480	0	947,444,520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재정과장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안 제12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안 제12조의2)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16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23조, 안 제31~34조)  
 · (현행) 사용·수익허가 → (개정안) 사용허가
- 라.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규정 (안 제28조)
-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인용 규정 현행화 (안 제32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2022. 10. . ~ 2022. 10. (20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하여서”를 “사용허가하여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p> <p>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p>
<p>&lt;신 설&gt;</p>	<p>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p> <p>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p>
<p>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u>사용·수익</u>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 ----- ----- <u>사용허가대상</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p> <p>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u> <u>용허가하는</u> -----</p> <p>3. ----- ----- ----- <u>사용허가하는</u> ----- -----</p> <p>제19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p>
<p>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안 된다.</u></p> <p>1.·2. (생략)</p> <p>제20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② ----- ----- <u>사용허가하여서</u>----- --.</p> <p>1.·2. (현행과 같음)</p> <p>제20조(<u>사용허가</u>) ----- <u>사용허가</u>----- -----.</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 --</p>

현 행	개 정 안
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u>사용허가</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21조( <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의 <u>사용·수익허가부</u> 를 비치하 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u>사용허가부의 비치</u> ) ---- ----- <u>사용허가부</u> -----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 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 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의 대 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 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 탁받은 관리수탁자가 <u>사용·수 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 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 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	③ ----- <u>사용허가</u> ----- ----- ----- ----- -----.

현 행	개 정 안
<p>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 ---</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⑤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7. 「<u>초지법</u>」 제18조에 따른 <u>공유재산 대부료</u></p>
<p>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p>	<p>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하는 경우</p> <p>2. 3. (생략)</p> <p>제33조(<u>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u>)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 ----- -- <u>사용허가</u>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u>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u>) ① ----- ----- ----- <u>사용허가</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사용</u> <u>허가</u>----- -----</p>

현 행	개 정 안
<p>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중도 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p>	<p>-----. ----- ----- ----- ----- -----.</p>
<p>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기 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 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그 부분 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사용허가</u> ----- ----- ----- ----- -----. 1. ~ 3. (현행과 같음)</p>

## 붙임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개정 2022. 4. 20.>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20.]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0.]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제목개정 2022. 4. 20.]

##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남원시 공고 제2022 - 1986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다. 자체계획 수립, 드론산업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안 제4조 ~ 제7조)
- 라. 위탁 및 재정지원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9조)
- 마.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바. 안전교육, 포상 등 규정 (안 제11조 ~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전략산업담당

#####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73)  
이메일(rhdlqtlgja5@korea.kr)

####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199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07. ~ 2022. 10. 24.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10.6.)	김○신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39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321-1	주1 경량철골조립식 축사(관리사) 61.2㎡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7.

남 원 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 남원시 공고 제2022 - 1995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정부 지원사업인 기본보상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상 효율성을 담보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기본 보상 담보내용 삭제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안 제2조제1호)
-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안 제2조제4호)

###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52), 팩스(063-620-6706), 이메일(luvich@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출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 1. 개정이유

정부 지원사업인 기본보상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상 효율성을 담보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기본 보상 담보내용 삭제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안 제2조제1호)
  -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안 제2조제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7. ~ 2022. 10. 2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u></p> <p>2.·3. (생 략)</p> <p>4. <u>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u></p> <p>5. ~ 8. (생 략)</p>	<p>제2조(담보내용) ----- ----- ----- -----.</p> <p>&lt;삭 제&gt;</p> <p>2.·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5. ~ 8. (현행과 같음)</p>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1999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 1. 노선 지정(변경)내용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도로 확장	구이	농도	도용선	301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임	남원시 주생면 주촌리 853	L=674m	내동 마을	8.0	8.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 시행자 : 남원시장

3. 사업시행기간 : 2019. 03. ~ 2023.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장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3층(건설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794-4	3,420	답	794-23	1,927.4	조성도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680		